

국가보조항로 특별계약조건(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국가보조항로 운항용역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00지방해양수산청 계약담당공무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국가보조항로 운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른 운항시간, 운항횟수, 운항속력 등의 운항계획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매표소 관리 등 보조항로를 이용하는 승객이 편리하도록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하도급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의무를 직접 이행해야 하며, 계약내용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5조(선원승계 및 근로자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사업자 선정 공고 당시 해당 항로에 운항중이던 선박의 선원을 계약상대자의 인사규정에 따라 승계 고용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고용승계된 선원과 계약기간 중에 고용된 선원의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시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고용승계된 선원 정원 범위에 한정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선박의 관리책임자 등의 국가보조항로 운항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선원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선박직원법」, 「선원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선원을 채용하여 선박운항중에 상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선원의 결원 또는 일시 업무량의 과다로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 지체 없이 인원을 보충해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관할구역내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선박관리업무 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고용을 승계한 선원의 임금을 지급할 때 입찰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계획서" 및 "인건비 산출내역"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장은 그 차액을 빼고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6조(보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원·선박공제 및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각각 가입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선박공제의 피보험자를 발주기관으로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한국해운조합에서 발행한 공제료 견적서를 근거로 입찰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입찰시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에 따라 공제료를 집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분손담보 특별약관(ITC (Hulls)) 조건에 따라 선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7조(전산발권) ①계약상대자는 연안여객선전산매표시스템을 통하여 여객승선권 및 화물운임표(차도선에 한정한다)를 발권해야 한다.

②연안여객선전산매표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전산발권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사실을 발주기관에 신고한 후 전산발권 이외의 방법으로 발권을 할 수 있다.

제8조(여객선 휴항 및 대체운항 등) ①계약상대자가 여객선 휴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과량주의보 등의 기상악화, 운항관리센터의 운항통제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휴항을 신청 또는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기상특보, 운항관리센터의 운항통제 사실확인서, 선박검사 신청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의해 요구되는 합당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선박운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선박검사 및 수리 등에 따라 여객선을 휴항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운항계획 등과 동등한 수준의 여객수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박을 대체 운항할 책임을 부담한다.

⑤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거나 제4항에 의한 대체 운항을 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운항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되는 운항결손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국유 여객선의 선박검사 및 수리 등을 위한 휴항 이외에는 국유 여객선 대신 사유선박을 대체 운항할 수 없다.

제9조(선박검사 및 예비선 사용 등) ① 「선박안전법」에서 규정된 정기·중간검사를 수검하기 위해 국유 예비선을 대체 운항하는 데 추가로 드는 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선박검사시기를 선박검사에정

일 2개월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법정 선박검사에 따른 국유 예비선 사용기간은 발주기관이 과거 검사집행기간 (정기검사는 20일, 중간검사는 15일 범위)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 예비선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운항여객선의 휴항에 따라 사유 여객선(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예비선을 포함한다)을 대체 운항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제1항 본문에 따른 국유 예비선 대체운항의 수입금은 예비선 관리선사의 수입으로 하며, 제2항에 따른 사유 여객선의 대체운항 수입금은 계약상대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법정 정기적 선박검사기간 이외에 국유 예비선 또는 사유선박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및 수입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 등에 따라 대체 운항되는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여객선이어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선박수리의 경우 선박수리업체의 선정, 선박수리내역 및 선박수리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내용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감리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⑦계약상대자는 선박검사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선박검사내역, 수리내역 및 검사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⑧계약기간 종료 등으로 선박을 발주기관에 반환하려는 시점이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기준일 이후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선박검사를 완료하고 발주기관에 여객선을 반환해야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기관제조사 등이 추천하는 연료유 및 윤활유 등을 사용해야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기관제조사 등이 권고·지시하는 부품의 교체주기 등의 정비기준에 따라 기관 등의 설비를 관리해야 하며, 그 기준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고장 등에 의한 손해 및 원상복구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⑪계약상대자는 선박을 수리할 때 입찰 시 제출한 "선박수리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수리비를 집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장은 그 차액을 차감하고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0조(물량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 보조항로 운항선박의 중간기항지 변경 등 계약물량과 계약조건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되 다음의 비목을 계약금액에 증감시킬 수 있다.

가. 선원의 증원(법정선원에 한정한다): 인건비

나. 선박 또는 선종의 변경: 유류비, 선박수리비, 공제료, 선용품비, 수입금

다. 기항지 변경 등 항로조정: 선원인건비, 유류비, 선용품비, 공제료, 수입금

라. 전체 또는 일부구간 운임의 변경: 수입금

마. 운항횟수의 변경: 선원인건비, 유류비, 선용품비, 공제료, 수입금

바. 항차당 운항거리의 변경: 유류비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수송기간, 하계철 또는 주말 등 항로별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증회운항 등에 따른 물량변경은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④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된 최저운항속력 미만으로 운항하거나 주기관의 사용유종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유류비의 증감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운항수입금이 계약금액과 비교하여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외생변수 발생 여부의 객관성이 명백히 확보된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때 10퍼센트의 증가분은 운영선사의 수입으로 하고 10퍼센트 초과분은 운영선사의 노력과 외생변수의 기여도를 50대 50으로 하여 조정한다. 운임수입이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외생변수 발생 여부의 객관성이 명백히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그러나 운항수입금의 증감이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외생변수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그 증감한 금액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가. 해당 섬 지역이 관광지로 조성되어 여객이나 차량이 크게 증가한 경우

나. "가고 싶은 섬" 등으로 선정되어 여객이나 차량이 크게 증가한 경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유치로 여객이나 차량이 크게 증가한 경우

라. 연육교(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 또는 연도교(섬과 섬을 잇는 다리)의 설치로 여객이나 차량이 크게 감소한 경우

마. 주민의 이도화(섬에서 주민들이 이탈하는 현상) 내지 무인화로 여객이나 차량이 크게 감소한 경우

바. 그 밖에 운임수입에 현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외생변수가 발생하였다고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그 밖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운임인상 등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선원인건비, 선용품비, 유류비, 안전관리비, 임시용선료 등을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집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상대자의 귀책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①계약상대자의 귀책없는 사유로 인한 1,000만원 이상의 대수선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수리비 계약금액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수리 등에 필요한 실비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및 선박운항에 따른 일반적인 사고 또는 고장에 따른 수리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자료제출 및 협조의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월별 선박운항실적 및 여객(차량)수송실적, 수입금 및 지출금 현황
2. 월별 운항결손액 사용내역
3. 선원변동내역
4. 선박유지보수 내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사항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발주기관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1. 승선인원 및 화물량 등의 수입금 내역 조사
2. 선원임금 지급현황, 선용품 구입실태 등의 지출비용 사용내역 조사
3. 선박 관리상태 조사

③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선원인건비, 안전관리책임자비: 월별 산출근거, 은행발행 이체확인서
2. 유류비: 유류공급과 관련한 해운조합의 세금계산서
3. 선박수리비: 선박수리와 관련한 선박수리 세부내역 증명서류(견적서, 수리 업체(조선소) 발행 세금계산서, 수리 전·후 증빙사진 등). 은행발행 이체 확인서 혹은 송금영수증
4. 여객·선원·선박·선주배상책임보험 공제료(보험료): 해운조합 발행 세금계산서(납부증명서)
5. 선용품비: 세금계산서
6. 임시 용선료: 세금계산서(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예비선을 사용한 경우 제외)
7. 전산매표시스템 수수료: 해운조합 발행 납부증명서
8. 일반관리비: 집행한 항목별 세금계산서, 은행발행 이체확인서 등
9. 이윤: 증빙서류 없음
10. 수입금: 전산매표시스템에 의한 수입금 내역 증명서

제14조(개선명령)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개선명령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운항계획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제4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3. 제5조에 의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거나 유류비 및 법정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
 4. 제5조를 위반하여 고용승계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성실히 근무하지 않는 경우
 5.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해운조합 공제를 가입하지 않거나 임의 해지 또는 공제료를 체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에 따른 전산발권을 하지 않는 경우
 7. 계약상대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휴향한 경우
 8. 계약상대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증빙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9. 계약상대자가 제8조제3항에 따른 선박운항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 계약상대자가 제8조제4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대체선박 운항 등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11. 제9조제7항에 따른 선박검사내역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2. 제9조제9항 및 제10항을 위반하여 기관제조사 등이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정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협조를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4.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입금을 누락하거나 횡령하는 경우
 15. 계약상대자가 선박수리 및 정비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분기별 점검에 의한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
 16. 계약상대자가 운항결손액을 선박운항과 관련 없는 용도로 유용한 경우
 17. 계약상대자의 승객에 대한 서비스가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지방청장이 인정한 경우
-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발주기관의 정당한 개선명령 등을 이행해야 한다.

제15조(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①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발주기관의 국가보조항로 운항과 관련한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인 보조항로 운항이 크게 저해된 경우

②발주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서면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해당사유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발주기관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계약해제 또는 해지 통보) ①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제·해지예정일 최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를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제·해지예정일까지 제3조 규정에 따라 여객선을 성실히 운항해야 한다.

③제1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의 국가보조항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해석) 계약내용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쌍방 간 합의하되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한다.